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09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김석기ㆍ지성호ㆍ이종성

박덕흠 • 황보승희 • 강민국

박성중 · 정진석 · 정동만

정희용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함)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두 가지뿐임.

설계수명제도를 최초로 채택한 미국은 법률에서 원전의 설계수명(Pl ant Design Life)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수명이 아니라 전력회사의 투자 이윤을 보장하면서 사업독점을 금지하려는 관점에서 설정한 기간임.

그렇기 때문에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설계수명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결국 해체하는 것은 전력 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원전 운영자로 하여금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외에 원전의 운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휴지(休止)"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3. "휴지"(休止)란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거나 영구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운전을 잠 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구정지"를 "영구정지 또는 휴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하지"를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영구정지"를 각각 "영구정지 또는 휴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휴지한 후 다시 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영구정지한"을 "영구정지 또는 휴지를 한"으로 한다.

제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구정지"를 "영구정지 또는 휴지" 로, "적용하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영구정지"를 각각 "영구정지 또는 휴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휴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의3,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휴지하려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4의2. (생 략) 1. ~ 24의2. (현행과 같음) <u><신</u> 설> 24의3. "휴지"(休止)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 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 속하여 운전하거나 영구정 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운 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제21조(허가기준) ① (생 략) 제21조(허가기준) ① (현행과 같 유) ②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영구정지 또는 휴지-을 영구정지를 하려는 경우에 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 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허 가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 ----대통령령으 니할 수 있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의 허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2. <u>영구정지</u>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발 7 전용원자로운영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변경허가를 받고 영구정지한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주기적 안정성평가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략)

1
영구정지 또는 휴지
2. 영구정지 또는 휴지
③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을 휴지한 후 다시 운전을 하
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①
<u>영구정지 또는</u>
<u> 휴지를 한</u>
②·③ (현행과 같음)

-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26조(운영에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
 -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제21 조제2항에 따라 <u>영구정지</u>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 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u>적용하지</u> 아니할 수 있다.
 -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2. <u>영구정지</u>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제26소(운영에 관한 안전소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영구정지 또는</u>
<u> 휴지</u>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u>.</u>
1
영구정지 또는 휴지
2. <u>영구정지 또는 휴지</u>